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63245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5. 12. 1.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강우규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5.5.23.강제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2025. 8. 18.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김영미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권자		200,000,000		2022.3.3.	2022.2.17.		
이보현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24.11.22.			
<b>&lt;비고&gt;</b>										
김영미: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b>비고란</b>										
1. 공부상 1동이나 현황 101동으로 표기됨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 순위 5번 2024년 4월 24일 제36910호 접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권자의 채권양수인인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 10. 27.자 협약서(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에서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장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63245

### [물건 1]

####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466-53, 466-89

이편한아침1단지 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서대로 696-35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공동주택

지1층 99.47㎡

1층 70.595㎡

2층 124.55㎡

3층 124.55㎡

4층 127.79㎡

옥탑1층 113.91㎡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5.555㎡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466-53

임야 929㎡

2. 동 소 466-89

임야 19㎡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948분의 62

감정평가액

207,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5.12.16

207,000,000

20,700,000

2회

2026.01.27

144,900,000

14,490,000

3회

2026.03.10

101,430,000

10,143,000

4회

2026.04.14

71,001,000

7,100,100

1. 공부상 1동이나 현황 101동으로 표기됨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 순위 5번 2024년 4월 24일 제36910호 접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권자의 채권양수인인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 10. 27.자 확약서(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에서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  
함.